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지자체가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는 활용처를 확대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지급 제외사업 변경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체노력으로 절감한 예산의 활용 가능 사업 확대(제13조의2)

지자체가 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지자체의 사업 선택 재량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의 정의를 기존 같은 부문에서 같은 분야의 사업으로 확대하고 단년도·일회성 사업에 대해서도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13조의2 개정

나. 기준보조율 및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변경(별표1, 별표2)

관광개발사업 관련 별표 조항의 유사중복을 해소하여 보조금 지원 가능 범위를 명확화하고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개·보수에 대해서는 지자체 업무로 이양하기 위해 시행령의 별표1 및 별표2를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입법예고(2025.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 중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분야에 속하는 사업
- 2. 제4항제1호에 따른 단년도·일회성 신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분야에 속하는 사업

제13조의2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신규사업. 다만, 단년도·일회성 사업은 제외한다.

별표 1 제6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7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 광역관광개발, 국가 주도 관광자원 개발사업	50	용지매입비 제외
71의2. 정부계획에 포함된 거점 문화시설 확충	신축: 50 리모델링: 60	용지매입비 제외

별표 2 제173호부터 제17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29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3. 관광지 개발조성(별표1의 제6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74. 문화관광자원개발 조성(별표1의 제6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75.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별표1의 제6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76.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지원(시설 개·보수 사업에 한정, 별표1의 제6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77. 관광안내체계 구축(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 별표1의 제6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78. 탐방로안내체계 구축(별표1의 제6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99.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개·보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및 제외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확정된 계속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별표 2 제299호의 신설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제13조의2(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음 각 호의 ----- ----- -----. 1.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분야에 속하는 사업 2. 제4항제1호에 따른 단년도·일회성 신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분야에 속하는 사업
④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규사업 2. (생략) ⑤ ~ ⑦ (생략)	④ ----- ----- -----. 1. 신규사업. 다만, 단년도·일회성 사업은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연 락 처	(044) 215 - 7158